

1. 개정이유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호, 2023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의3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

관·해양수산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 본문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, “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”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

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명”을 “2명),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1명(4급 1명)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1명”으로 한다. 제10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129
정무직 계	1
위원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128
고위공무원단	3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	1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4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	10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 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 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 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 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14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 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 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 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 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	42
기상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1
행정주사·통계주사·감사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사· 수의주사·해양수산주사·기상주사·보건주사·의료기술주사 ·식품위생주사·약무주사·간호주사·환경주사·항공주사· 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	37
행정주사·공업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(비서)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 주사보	8
운전주사보	1
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·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 서기보	1
운전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2
전문경력관 나군(홍보·사진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 담당)	1

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단서 관련)

총계	129
정무직 계	1
위원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128
고위공무원단	3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	1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4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	10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14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	42
기상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1
행정주사·통계주사·감사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사·수의주사·해양수산주사·기상주사·보건주사·의료기술주사·식품위생주사·약무주사·간호주사·환경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	37
행정주사·공업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(비서)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8
운전주사보	1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·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	1
운전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2
전문경력관 나군(홍보·사진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 담당)	1

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9조 관련)

총계	38
일반직 계	38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2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	19
행정주사 · 통계주사 · 감사주사 · 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기상주사 · 보건주사 · 환경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	12
공업주사 · 기상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	4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기획조정관) ① (생 략)	제2조의2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, 국제협력담당관, 안전소통담당관 및 혁신행정데이터팀을 두며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하고, 팀장은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3(감사조사담당관) 감사조사담당관은 <u>부이사관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2조의3(감사조사담당관)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3조(운영지원과장) 운영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3조(운영지원과장)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6조(안전정책국) ① · ② (생 략)	제6조(안전정책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</u>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.	③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</u> ----- -----.

④ ~ ⑦ (생략)

제7조(방사선방재국) ①·② (생략)

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고, 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④ ~ ⑨ (생략)

제7조의3(고리원전·월성원전·한빛원전·한울원전·대전지역사무소장)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,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사무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방사선방재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3(고리원전·월성원전·한빛원전·한울원전·대전지역사무소장) -----
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
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-----

----- 공업사무관

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. 다만,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 · 운영하는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 · 운영하는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

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-----
-----.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-----.

제8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-----.

소속기관 직제」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.

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(4급 1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3명, 6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0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조사담당관을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소통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----- 10퍼센트 -----

--.

② -----

----- 2명),
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1명(4급 1명)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1명)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